

## 2014년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

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『2014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(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)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

2014년 7월 10일  
중소기업청장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·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
- 추가지원규모** : 31억원 내외
- 지원대상** :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- 지원내용**
  -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
  -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

## 2. 신청자격

- (신청지역) 서울, 대구, 대전, 울산, 세종, 강원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- (신청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
- (주관기관)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

## 3. 지원금액 및 한도

-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75%이내
-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 (2년차 40%이상)
  - \* 현금 부담비율 : 1년차 3%이상, 2년차 4% 이상

지원 규모	정부지원 비중			주관 기관	지원대상	비 고
	구분	국비	도비			
2년	1년차	50%	25%	대학 및 연구기관	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 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	지자체 매칭
2억원	2년차	40%	20%			

※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

## 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'14. 8. 11(월) ~ 8. 22(금)
- 신청방법
  - 인터넷 접수 :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([www.smttech.go.kr](http://www.smttech.go.kr))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제출
  - 신청 시 구비서류
    -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서
    -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-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(기업 및 대표자) 등

## 5. 선정절차



### □ 현장평가

#### ○ 참여기업 현장평가 : 관리기관

-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측으로 '기업부설연구소 설치확인서' 및 '과제 책임자 경력증명서'를 송부하여 현장평가 시 주관기관 역량 증빙
  - \* 필수요건으로서, 기존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관리기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주관기관의 역량과 참여기업 현황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에 선정예상 과제의 1.5배수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
  - \* 사업의 이해도, 연구소 유지방향 및 계획, 기술개발필요성, 연구전담인력 확보현황, 연구장비 활용계획, 사업화 실적, 기술개발 연관성 등을 평가
  - \* 단, 60점 미만 과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

### □ 대면평가

#### ○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대면평가를 실시

- 주관기관의 전문성, 산학연협력의 필요성,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, 기술개발의 필요성, 기술개발 평가항목,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,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
- 신청사업비의 적절성 및 연구장비 도입의 타당성 검토
- 60점 이상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

### □ 지원과제 선정

-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·확정

## 6. 지원제외 사항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대학·연구기관, 중소기업, 대표자 등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- ② 국세·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
-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
-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
-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
-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 (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  
-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-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(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- ⑥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
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 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-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)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

- ※ 국세·지방세,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,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
- 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## 7. 기타 공지사항

- 중소기업은 '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'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
-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'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'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가능
  - ※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
- '05년 이후 개별 기업 당 '저변확대' 사업을 총 3회 이상 수행했거나 '선택집중'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(저변확대 졸업)
  - ※ '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' 참여기업은 '13년부터 참여횟수로 계산되므로 '13년 이전 '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' 참여실적은 '저변확대' 수행실적에서 제외
  - ※ 연도별 '저변확대' 및 '선택집중' 사업 :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(<http://www.smttech.go.kr>)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대학·연구기관, 중소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

※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

## 8. 문의처

### ○ 관리기관 (지방중소기업청)

기관명	전 화	주 소
서울	02-2110-6361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
부산·울산 (울산사무소)	051-601-5145 (052-283-0335)	부산 감서구 녹산산단 335로 8 (울산 북구 산업로 915)
대구·경북	053-659-2502	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첩단로 132
광주·전남	062-360-9158	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
대전·충남 (천안사무소)	042-865-6146 (041-564-2284)	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(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)
강원	033-260-1633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전북	063-210-6452	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	055-268-2564	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제주	064-710-2637	제주시 문연로 6

### ○ 전문기관

전문기관		전 화	문의사항
한국산학연합회	R&D 콜센터	1357 (내선 3번)	신청·접수 및 향후일정 등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tech.go.kr>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